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 행정과	1

(2015. 3. 30)

마포구의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년 3월 24일(화)
- 제출자 : 이동주 의원외 11명

3. 의안 회부일자

- 회부일자 : 2015년 3월 24일(화)

4. 관계법규

-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의정활동 보고)

5. 제출이유

- 동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에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동(洞)자치회관에서 의정활동보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제5호에서는 정치적 이용 목적으로 동(洞)자치회관 대관을 이용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맞도록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6. 주요내용

- 마포구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는 동(洞)자치회관을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하여 운영하여야 함.

다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한다.(안 제3조제5호 단서 신설)

[검토의견]

-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에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직선거법』 제111조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보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보고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회수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차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대법원 2009.4.23. 선고)에 비추어 볼때,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순수한 의정활동보고회 등은 정치적 이용목적이 없다고 보아 우리 구 동(洞)자치회관 대관 이용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호에서 마포구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는 동(洞)자치회관을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하여 운영하여야 함. 다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한다」 라고 단서규정을 신설함.

- 검토의견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5호에 따르면 정치적 이용 목적으로는 동(洞) 자치회관 이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이는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에게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를 보장하지 못함은 물론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규정으로, 우리 구 조례에서 불분명한 의정활동보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첫째, 정치적 목적으로 동(洞) 자치회관 이용은 계속 배제하겠지만 둘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함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적합한 개정내용임.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2015.3.24.~3.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됨이 없고,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5호 단서 규정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치적 이용 목적을 가지지 않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로 보고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대상에서 예외로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의정활동 보고장소로서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서 의정활동 보고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례 【『의정활동보고 관련 선거법 안내』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363호, 2015.2.12)】로 보고 있어, 이번에 의정활동보고회를 정치적 이용 목적에서 예외로 한 우리 구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규

공직선거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②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 표지를 첨부·게시할 수 있으며,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서항(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⑤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와 표지의 규격·수량,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 의정활동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0.10.31 조례 제470호, 2014.11.20 조례 제980호 일부개정]

제3조(원칙) 제2장에서 정한 자치회관과 제3장에서 정한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지역사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참 고 자 료

의정활동보고 관련 선거법 안내

①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111조제1항]

1. 대상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2.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3. 금지행위 :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의 업적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포함)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함.

4. 벌 칙 : 법 제111조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

② 주요 선례

판 단 기 준

- 국회의원이 하는 집회·보고서·컴퓨터·전화 등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허용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일 뿐이고,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공직선거법 제111조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보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의정활동보고가 선거운동의 방법과 횟수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선거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2).

- 의정보고서의 발행부수·면수·규격 또는 제작비용에 관하여 선거법상 제한 규정이 없음.

2 보고장소

할 수 있는 사례

- 주최자의 허락 하에 다른 목적을 가진 선거구민의 행사·집회·모임 등 장소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 주부대학·교양강좌 강의를 끝난 후 의정보고 가능
-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서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가정집, 정당연락소 책임자 개인 집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 다만, 일반가정집에서 개최하는 경우 의정보고회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첩부하는 등 참석을 원하는 선거구민의 출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국회의원이 거리 및 시장 등에 행사용 천막 등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거나 의정보고에 관심이 있어 행사용 천막에 들어온 지역민에게 의정보고에 대한 응답을 하는 행위(2010. 7. 16.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 등 옥외에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2007. 7. 16. 회답)
-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일반 선거구민이 의정보고회 개최상황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2010. 6. 30. 회답)